

보관금 국고귀속 공고

서울은평우체국에서는 보관 의무 기간이 경과한 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국고 귀속일 : 2021. 10. 01.
2. 국고귀속범위 : 보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상속예금미지급분
3. 국고귀속대상 : 1건

| 우체국명 | 보관사유 | 피상속인 (예금주) | 상속인 | 금액(원) | 보관일자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서울연신내 | 상속예금 분할지급 | 故 김*성 | 김*용 | 316,310 | 2013.06.20. |

4. 공고기간 : '21. 09. 01.(수) ~ '21. 09. 30.(목)
5. 공고장소 : 서울은평우체국 홈페이지(www.koreapost.go.kr/se/122)
및 서울은평우체국 · 서울연신내우체국 국전 게시판
6. 환급기간 : 공고기간 내 ('21. 09. 01.~ '21. 09. 30.)
7. 환급신청 : 서울연신내우체국 방문 (문의전화 : 02-357-0004)
8. 구비서류
 - 가. 고인기준 기본증명서 1부
 - 나.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다. 신분증

2021년 9월 1일

서울은평우체국장